오산 세교2지구(A-14블록) 우미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 이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당첨을 위하여 건설출수,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세대평면, 사업일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알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접수 운영 안내
- 현장접수 방문은 접수일 전일 정한 시간대를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하여 방문 예약 접수는 당사 홈페이지(www.lynn.co.kr)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현장접수 원칙적 운영금지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단타청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그럼에 잔여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현장접수하여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전당첨자명단 이후 사전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사전공급계약 체결에 한해 현장접수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인원 사전당첨자(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외 동반 1인으로 제한합니다.
2. 현장접수 방문 시 안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현장접수 일정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현장접수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나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이력 체류한 경우
- 기타 신청자원장 이외에 미표지 되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사전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사전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정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오산 세교2지구 우미린 분양 상담전화☎ 031-957-1600 등을 통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복주하는 상담전화와 사전당첨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접수 자체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당첨자 본인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사항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상담 및 변경이 발생하오니 공급공고 내용에 대하여 해당이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분석과 제공으로 일부 청약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자로부터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이익도 청약자의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분양시장은 시장자율을 활용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이해하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됩니다.

★관련 청약제한 관련 유의사항 안내★

① 본 이해하는 공공주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 사전청약" 이해하로 민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주정분양가격, 추정 본 청약 시기 및 입주예정일 등은 향후 본 청약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본 이해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공공 - 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하신 사도 무우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지역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여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③ 본 이해하는 민간 사전청약 이해하로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④ 본 이해하는 입주자자격을 사용하여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는 주택으로 당첨시 입주자자격 효력이 상실되며, 향후 사전당첨자 지위로기 또는 복직적 사전당첨자 한번 등 계재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 입주자자격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지역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여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중복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한 사전 당첨자 및 일반공급에서 중복 당첨자 및 부적격 사전당첨자 한번 등 해지 사유 발생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주소인 경우 - 공무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한계의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이 토지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로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민영주택의 창약 예비기준금액("주택금액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오산시 및 경기도	시골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0원	3000원	2500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0원	6000원	4000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0원	1,000원	7000원
모든면적	5000원	1,500원	1,000원

※ 개정된 주택금액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역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창약이 가능.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 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 시 부양가족수 산정) - 청약신청자 본인 및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은 제외 - 만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미혼 이외 미혼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제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3조제6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2년 이내에 가입대출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원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구 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단,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무주택기간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월 단위로 산정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 ③ 주택소유등기일은 주택의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전검사필증 등 주택의 사용승인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에 의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전검사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④ 주택소유등기일은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택의 소유권 등기사실이 증명되는 서류에 의한 등기일로 한다. ⑤ 주택의 소유기간은 주택소유등기일부터 주택의 처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 ⑥ 주택의 처분은 주택의 매도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처분하여 그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이 별표에서 "부양가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이 별표에서 "부양가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여자 또는 만 65세 이상인 남자일 것. 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다)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라)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사)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자)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차)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파)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러)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커)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퍼)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모)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소)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오)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포)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일반공급 사전당첨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		사전당첨자 서약서	본인	당사 현장접수시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외원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제외) "상세" 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거주하고 그 가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수도권 거주자로 당첨시 2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세대구역 거주자로 당첨시)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확인서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경우(현장접수시에 비치)
일반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증사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당첨자와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외원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인감증명 및 인감증명서	본인	주민등록증 주민번호 등록 기준이며 당첨자 인감증명 발급 또는 주택청약 시스템 청약홈 콜센터(1644-7445)를 통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신청 후 주택청약 시스템 청약홈 콜센터(1644-7445)를 통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신청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기준확인서	해당 주택	주택 건축물관리대장(무재산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무주택기준확인서	해당 주택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소명자료(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주택	주택소유자 등본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기관의 담당자상 작성하여 본인(한국토지공사 발급)
대리인 계약시 (+ 본인의 모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외원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현장접수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외원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원비진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 불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구분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택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지급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근근로소득세 납부서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급여도 전자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택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근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자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택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로 해당)	– 종금이력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장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직장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정보제공동의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서 (일은 경우 사진정합이 모집공고일 기준 기재일 시기에 확정신고내역서 발급)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기입사역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일은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출근여부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기입사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서(현장접수 시에 비치) – 사진정합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 및 지원일자가 아닌 지원서 전체로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사진정합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금액 증명 및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접수장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원비진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소득 기준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에 직장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① 해당직장/세무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원비진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 불가.

■ 일반공급 사전당첨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		사전당첨자 서약서	본인	당사 현장접수시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외원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거주하고 그 가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수도권 거주자로 당첨시 2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세대구역 거주자로 당첨시)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확인서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경우(현장접수시에 비치)
일반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증사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당첨자와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외원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인감증명 및 인감증명서	본인	주민등록증 주민번호 등록 기준이며 당첨자 인감증명 발급 또는 주택청약 시스템 청약홈 콜센터(1644-7445)를 통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신청 후 주택청약 시스템 청약홈 콜센터(1644-7445)를 통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신청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기준확인서	해당 주택	주택 건축물관리대장(무재산등본 포함